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-7호

강서구 공항동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(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-143호(2022.12.07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1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
2. 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고시하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14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공항동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역주택조합사업
2.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송정역세권 지역주택조합 (조합장 김한진)
나. 주 소 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, 1013호(마곡동, 푸리미타워)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·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1-1번지 일원
나. 대지면적 : 10,606.6㎡
다. 주택건설의 규모 : 지하3층/지상14층, 공동주택 5개동 450세대,
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, 연면적 63,093.5793㎡

전용면적(m ²)	64.9151	64.9471	64.9501	64.9884	64.9258	72.9018	72.9962	72.9927	84.9541
세대수 (분 양)	14	37	27	14	40	21	28	26	42
전용면적(m ²)	40.9360	45.9339	45.9250	49.9577	49.9573	49.9790			
세대수 (분 양+ 장기전세)	44 (5+ 39)	81 (6+ 75)	21 (0+ 21)	14 (12+ 2)	20 (13+ 7)	21 (18+ 3)			
합 계	450세대(장기전세주택 147세대)								

라. 기타사항 : 기부채납시설(어린이집) - 지하1층/지상1층, 연면적 762.6861㎡

4. 사업시행 기간 : 2022년 12월 ~ 2028년 12월

5.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

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
(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)

라. 기타 「주택법」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(경미한 변경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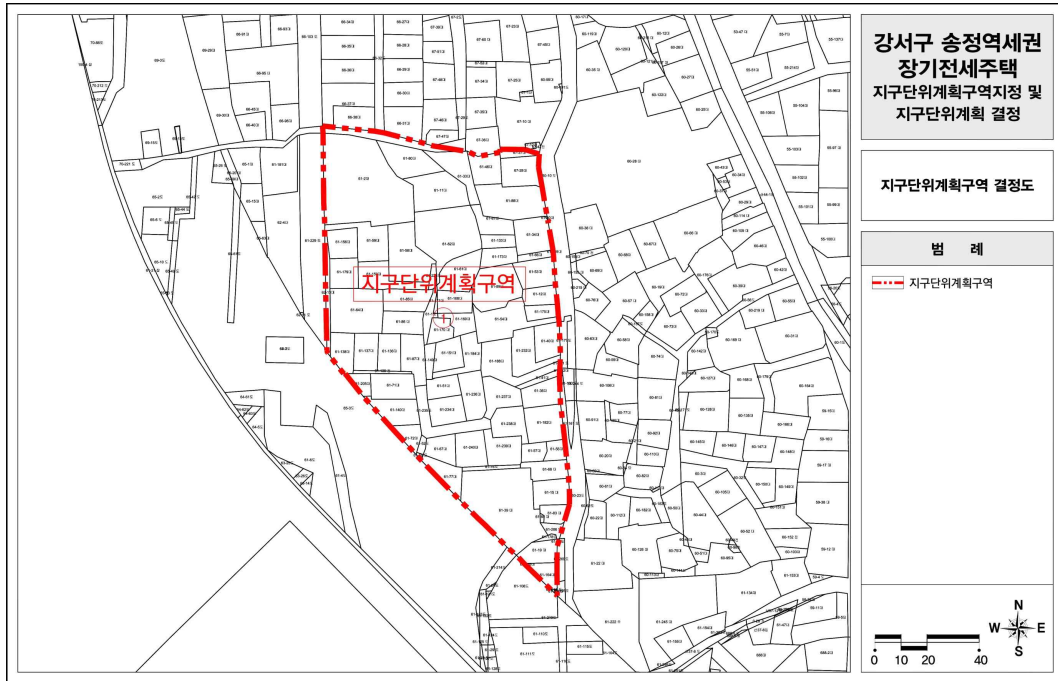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신 설	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서구 공항동 61-번지 일원	11,484.0	감) 59.9	11,424.1	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-143호 (22.12.07)	-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위 치	면 적(m ²)	결 정 사 유
변경	①	강서구 공항동 61-1번지 일원	11,424.1	◦ 택지예정좌표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

[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]



2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■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	면 적 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1,484.0	감) 59.90	11,424.1	100.0	
주거 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(7층)	741.7	감) 15.70	726.0	6.5	
	제3종 일반주거지역	91.5	—	91.5	0.8	
	준주거지역	10,650.8	감) 44.20	10,606.6	92.7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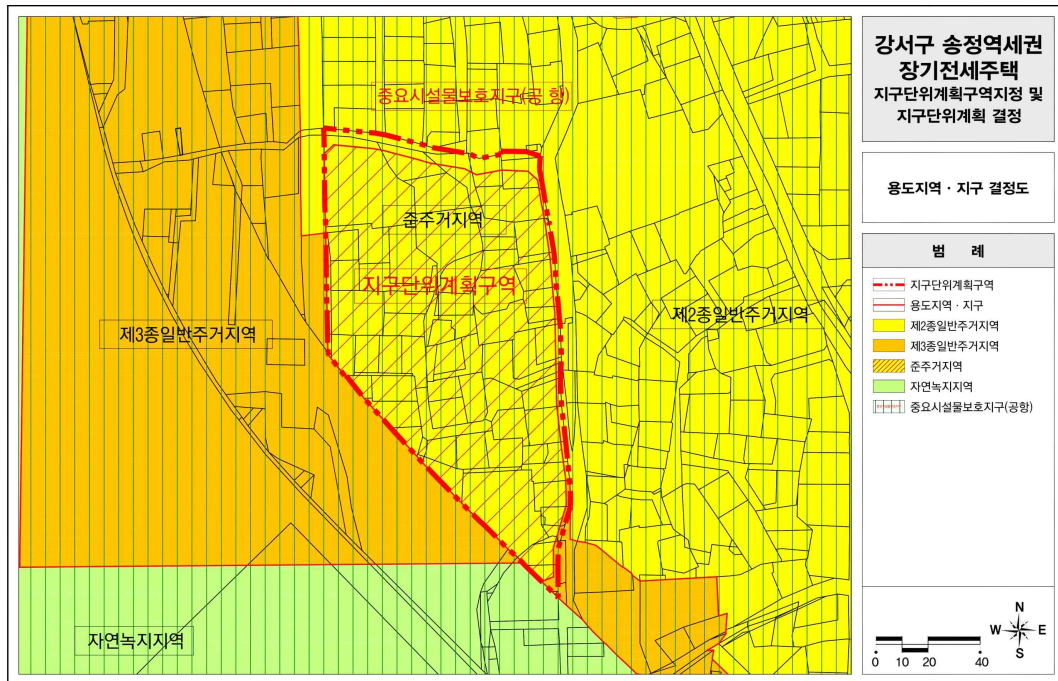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

위 치	용 도 지 역	면 적(m ²)		결 정 사 유
		기 정	변 경	
강서구 공항동 61-1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)	741.7	726.0	◦ 택지예정좌표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
	준주거지역	10,650.8	10,650.8	◦ 택지예정좌표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

■ 용도지구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-	보호지구	중요시설물 보호지구 (공항)	신월, 공항, 마곡, 화곡, 가양, 신정	57,931,000	1977.04.22	-

[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]



3)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가.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 원 (m)			기 점	종 점				
기정	소로	3	1	6~8	국지 도로	270 (172)	공항동 60-10	공항동 61-100	일반 도로	-	강서구고시 1994-22호 (94.04.28)	
기정	소로	3	가	6	국지 도로	83	공항동 67-28	공항동 66-37	일반 도로	-	강서구 고시 제2022-143호 (22.12.07)	

※ ()의 숫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(공항동 61-1번지 일원)내에 관한 사항임.

나. 사회복지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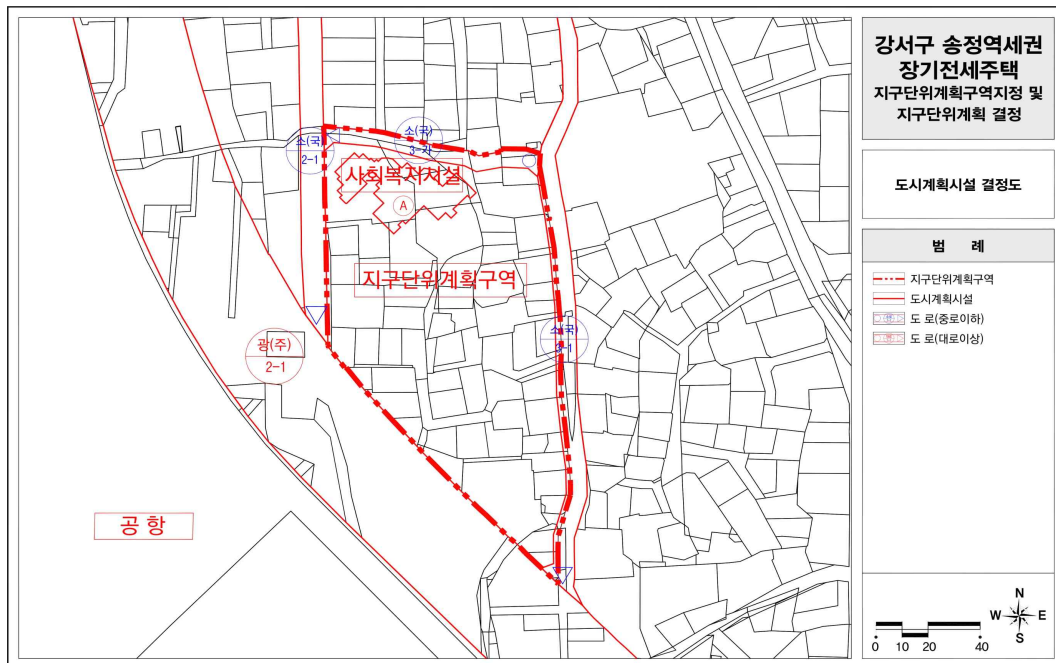
■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구 분	기 정	변 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 고
변경	㉠	사회 복지 시설 (어린이집)	공항동 61-11번지 일원	층수(층) : 지하1층 ~ 지상1층	지하1층 ~ 지상1층	-	지하1층 ~ 지상1층	강서구 고시 제2022-143호 (22.12.07)	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
				수평투영면적 : 734.44㎡	738.94㎡	감) 4.5㎡	734.44㎡		

■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결정 사유서

도면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㉠	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)	◦ 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(공간적 범위 결정) ◦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: 762.68㎡ - 지상1층) 734.44㎡ - 지하1층) 28.24㎡ ◦ 층수 : 지하1층~지상1층 ◦ 수평투영면적 : 734.44㎡	◦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면적 변경

[도시계획시설 결정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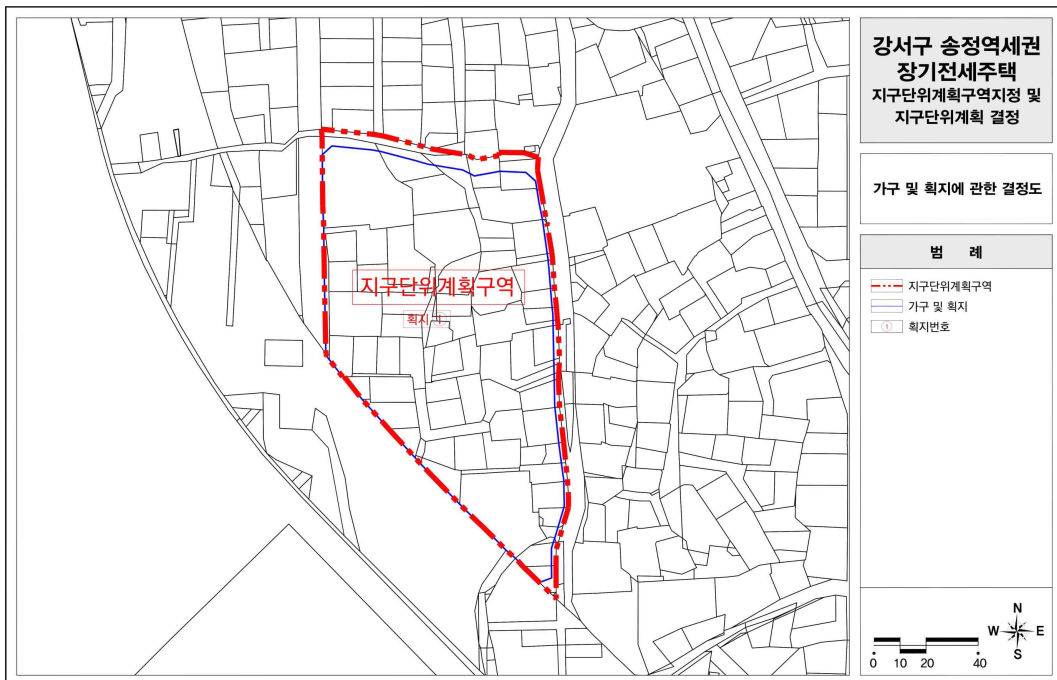


4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획지번호	위 치	면 적(m ²)	
기정	11,484.0	①	공향동 1-168번지 일원	10,650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-	공향동 67-37번지 일원	833.2	도로
변경	11,424.1	①	공향동 61-168번지 일대	10,606.6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-	공향동 67-37번지 일대	817.50	도로

[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]



5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
허용용도	◦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불허용도	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나. 건폐율에 관한 계획

계 획 내 용	비 고
60%이하	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

다. 용적률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기준용적률	215.8% 이하	◦ 혼재지역(제2종 7층, 제3종일반)으로서 용도지역 면적에 따른 평균값 적용
(패키지) 허용용적률	399.0% 이하	◦ 허용용적률까지 적용하지 못하여 399%이하로 결정. (실계: 364.65%)
상한용적률	400.0% 이하	◦ 사전자문(2016.03.07.)결과에 따라 용적률은 400%이하로 계획함.

라. 높이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최고높이	48m 이하	수평표면구역 (해발57.86m이하)

마.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건축한계선	◦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하여 지정	-

바.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계획
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(2011.05.03.)	계 획 내 용	비 고
◦ 전용면적 60㎡ 이하 : 60% 내외 ◦ 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 : 30% 내외 ◦ 전용면적 85㎡ 초과 : 10% 내외 ※ 사업지의 공동주택 규모계획, 임대주택 공급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주택공급부서와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.	◦ 전용면적 60㎡ 이하 : 100% (147세대)	-

사. 비주거시설의 건축 비율에 관한 계획

- 기 정
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(2011.05.03.)	계 획 내 용
◦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 이 경우 지상층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% 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. 1) 지상층 연면적의 10% 이상의 비주거시설 설치 가능 2)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가능 단, 이경우에도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.	◦ 지상층 연면적 : 38,734.96㎡ ◦ 비주거시설 : 5,187.40㎡(13.39%) - 지상층 비주거시설 : 749.86㎡ - 근린생활시설 : 2,782.79㎡ - 어린이집 : 762.25㎡ - 커뮤니티지원시설 : 1,167.20㎡ - 생활편익시설 : 475.16㎡

- 변 경
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(2011.05.03.)	계 획 내 용
◦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 이 경우 지상층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% 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. 1) 지상층 연면적의 10% 이상의 비주거시설 설치 가능 2)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가능 단, 이경우에도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.	◦ 지상층 연면적 : 38,676.92㎡ ◦ 비주거시설 : 5,155.85㎡ (13.33%) - 지상층 비주거시설 : 746.39㎡ - 근린생활시설 : 2,699.23㎡ - 어린이집 : 762.68㎡ - 커뮤니티지원시설 : 1,199.24㎡ - 생활편익시설 : 494.70㎡

아.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

- 기 정

구 분		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(11.05.03)	건 축 계 획	비 고
필 수 항 목 (4개)	지속 가능한 건축구조	◦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제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해야함	◦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계획 (벽식의 가변성을 고려한 혼합구조로 계획)	
	커뮤니티 지원시설	◦ 장기전세주택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%(최소 450㎡) 이상 (게스트하우스, 휘트니스센터, 어린이집, 노인시설, 마을회관, 지역도서관, 지역갤러리, 문화센터 등 일반분양자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) ※ 용도와 운영계획을 주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안	◦ 법정 : 37,756.72㎡(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) × 3% = 1,132.70㎡ ◦ 계획 : 1,167.20㎡	
	에너지 효율 건축물	◦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◦ 지구단위계획상 적용사항 포함 ◦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인증여부 입증	◦ 적용(사용승인검사 전 반영)	
	친환경 건축물	◦ 친환경 분양 성능인증(우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) ◦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면녹화 ◦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 ◦ 친환경적인 외부창호 계획 ◦ 사업주체는 예비인증서 제출	◦ 적용(사용승인검사 전 반영)	
선 택 항 목	신재생 에너지 사용	◦ 「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% 이상을, 일반건축물은 3% 이상을 설치	◦ 적용(사용승인검사 전 반영)	3개 중 1개 선택 적용
	공공기여 방안	◦ 지하광장, 지하보행통로, 지하철관관련 시설 (연결통로, 출입구, 환기시설 등)	-	
	역사문화 보전계획	◦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한 지구지정 여부	-	

- 변경

구 분		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(11.05.03)	건 축 계 획	비 고
필 수 항 목 (4개)	지속 가능한 건축구조	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제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해야함	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계획 (벽식의 가변성을 고려한 혼합구조로 계획)	
	커뮤니티 지원시설	- 장기전세주택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%(최소 450㎡) 이상 (게스트하우스, 휘트니스센터, 어린이집, 노인시설, 마을회관, 지역도서관, 지역갤러리, 문화센터 등 일반분양자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) ※ 용도와 운영계획을 주변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안	- 법정 : 37,707.72㎡(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) x 3% = 1,131.23㎡ - 계획 : 1,199.24㎡	
	에너지 효율 건축물	-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- 지구단위계획상 적용사항 포함 -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인증여부 입증	적용(사용승인검사 전 반영)	
	친환경 건축물	- 친환경 분양 성능인증(우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) -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면녹화 -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 - 친환경적인 외부장호 계획 - 사업주체는 예비인증서 제출	적용(사용승인검사 전 반영)	
선 택 항 목	신재생 에너지 사용	「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% 이상을, 일반건축물은 3% 이상을 설치	적용(사용승인검사 전 반영)	3개 중 1개 선택 적용
	공공기여 방안	지하광장, 지하보행통로, 지하철관련 시설 (연결통로, 출입구, 환기시설 등)	-	
	역사문화 보전계획	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한 지구지정 여부	-	

■ 공공시설 부담기준

- 기 정

구 분	면 적(㎡)	공공시설 부담기준	공공시설 확보면적(㎡)
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)	7,284.3	3단계 상향시(25%이상)	$7,284.3 \times 0.25 = 1,821.1$
제3종일반주거지역	3,366.5	1단계 상향시(15%이상)	$3,366.5 \times 0.15 = 505.0$
합 계	10,650.8	-	2,326.1㎡(21.8%)이상

- 변 경

구 분	면 적(㎡)	공공시설 부담기준	공공시설 확보면적(㎡)
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)	7,251.1	3단계 상향시(25%이상)	$7,251.1 \times 0.25 = 1,813.5$
제3종일반주거지역	3,352.5	1단계 상향시(15%이상)	$3,352.5 \times 0.15 = 502.9$
합 계	10,606.6	-	2,316.4㎡(21.8%) 이상

■ 계획대상지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

- 기 정

구 분	공공시설 부담률	비 고
공공시설(도로)	833.20㎡(7.8%)	소로3-1호선(8m) 확폭, 소로3-가 호선 신설
시설물 기부채납(어린이집)	649.57㎡(6.1%)	시설물 환산면적 + 대지지분
장기전세주택 무상양여 지분 중 공공시설 부담률에 해당되는 면적	1,279.87㎡(12.0%)	장기전세주택 총 토지지분 : 2,559.74㎡
합 계	$833.20 + 649.57 + 1,279.87$ $= 2,762.64$ (25.9%)	

- 변 경

구 분	공공시설 부담률	비 고
공공시설(도로)	817.50㎡(7.7%)	소로3-1호선(8m) 확폭, 소로3-가 호선 신설
시설물 기부채납(어린이집)	645.29㎡(6.1%)	시설물 환산면적 + 대지지분
장기전세주택 무상양여 지분 중 공공시설 부담률에 해당되는 면적	1,274.81㎡(12.0%)	장기전세주택 총 토지지분 : 2,549.63㎡
합 계	$817.50 + 645.83 + 1,274.81$ $= 2,737.60$ (25.8%)	-

■ 상한용적률 산정

- 기정

구 분	산 출 결 과	산 출 내 역
공공시설 총 제공면적	1,482.77	◦ 도로(833.20㎡) + 시설물 기부채납(649.57㎡)
가중치	0.95	◦ 가중치 :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/ 사업부지 용적률 = $[(741.7 \times 200\%) + (91.5 \times 250\%)] / 215.8\% = 0.95$
α	0.1392	◦ α = 공공시설 제공면적 /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= $1,482.77\text{㎡} / 10,650.8\text{㎡}$ = 0.1392
상한용적률	467.60%	◦ 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 × 가중치 × α) = $399 \times (1 + 1.3 \times 0.95 \times 0.1392)$ = 467.60% ◦ 건축계획 용적률 : 363.68%
상한용적률 적용		400% 이하 ※ 사전자문(2016.03.07.)결과에 따라 용적률은 400%이하로 계획함

- 변경

구 분	산 출 결 과	산 출 내 역
공공시설 총 제공면적	1,462.79	◦ 도로(817.50㎡) + 시설물 기부채납(645.29㎡)
가중치	0.95	◦ 가중치 :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/ 사업부지 용적률 = $[\{(726.0 \times 200\%) + (91.5 \times 250\%)\} / (726.0 + 91.5)] / 215.8\%$ = 0.95
α	0.1379	◦ α = 공공시설 제공면적 /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= $1,462.79\text{㎡} / 10,606.6\text{㎡}$ = 0.1379
상한용적률	466.95%	◦ 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 × 가중치 × α) = $399 \times (1 + 1.3 \times 0.95 \times 0.1379)$ = 466.95% ◦ 건축계획 용적률 : 364.65%
상한용적률 적용		400% 이하 ※ 사전자문(2016.03.07.)결과에 따라 용적률은 400%이하로 계획함

■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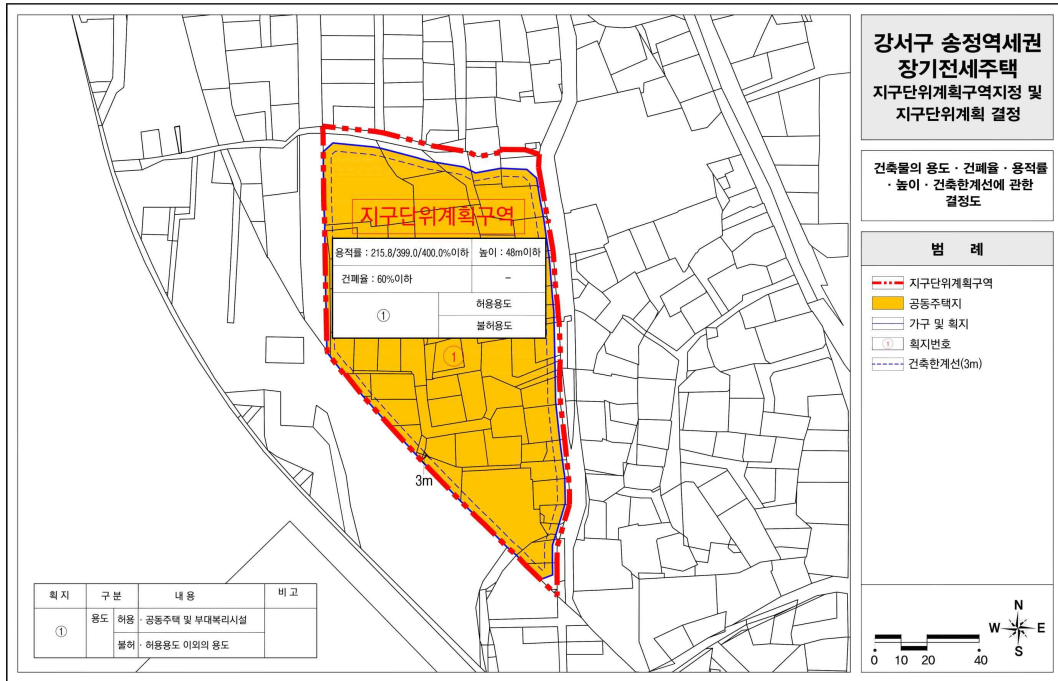
- 기 정

구 분	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(11.05.03)	계 획	비 고
장기 전세주택 건설비율	◦ 현장여건 및 제도상 허용용적률까지 적용하지 못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5/10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상 적용한 증가용적률의 50/100	◦ 건축계획 용적률 : 363.68% ◦ 완화된 용적률 : 148.68% (73.94%이상 계획 필요) ◦ 장기전세주택 계획 용적률 : 87.40%	-
공공시설 부담률	◦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5% ◦ 용도지역 3단계 상향시 25%	◦ 공공시설(순부담) : 1,482.77㎡(13.9%) ◦ 장기전세주택 무상양여 지분: 1,279.87㎡(12.0%) 합계 = 2,762.64㎡ (25.9%)	공공시설 부담기준 = 2,326.1㎡ (21.8%)
커뮤니티 지원시설	◦ 장기전세주택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%(최소 450㎡) 이상 (게스트하우스, 휘트니스센터, 어린이집, 노인시설, 마을회관, 지역도서관, 지역갤러리, 문화센터 등 일반분양자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) ※ 용도와 운영계획을 주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안	◦ 법정 : 37,756.72㎡ (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) × 3% = 1,132.70㎡ ◦ 계획 : 1,167.20㎡	-

- 변경

구 분	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(11.05.03)	계 획	비 고
장기 전세주택 건설비율	◦ 현장여건 및 제도상 허용용적률까지 적용하지 못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5/10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상 적용한 증가용적률의 50/100	◦ 건축계획 용적률 : 363.68% ◦ 완화된 용적률 : 148.68% (73.94%이상 계획 필요) ◦ 장기전세주택 계획 용적률 : 87.40%	-
공공시설 부담률	◦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5% ◦ 용도지역 3단계 상향시 25%	◦ 공공시설(순부담) : 1,462.79㎡(13.8%) ◦ 장기전세주택 무상양여 지분: 1,274.81㎡ (12.0%) 합계 = 2,737.6㎡ (25.8%)	공공시설 부담기준 = 2,326.1㎡ (21.8%)
커뮤니티 지원시설	◦ 장기전세주택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%(최소 450㎡) 이상 (게스트하우스, 휘트니스센터, 어린이집, 노인시설, 마을회관, 지역도서관, 지역갤러리, 문화센터 등 일반분양자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) ※ 용도와 운영계획을 주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안	◦ 법정 : 37,756.72㎡ (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) × 3% = 1,132.70㎡ ◦ 계획 : 1,167.20㎡	-

[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도]



6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

■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

구분		계획내용	비고
대지내 공지	건축한계선	대지경계로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	-
	전면공지	- 서측 건축한계선 지정부분 보도(자전거도로 겸용)로 조성 - 남측 건축한계선 지정부분 보도로 조성 - 북측 건축한계선 지정부분 2m를 보도로 조성 - 동측 건축한계선 지정부분을 소로3-1호와 보도폭 합계가 3m가 되도록 보도(자전거도로 겸용)로 조성	-
교통 처리	차량출입 허용구간	대상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 허용구간(12m)을 설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함.	-

